

일본 수산관계시설 재해복구 사업의 개요



사노 후미토시(佐野文敏)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 방재어촌과
재해사정관

「재해」라는 것은 폭풍, 홍수, 고조,
지진 외에 이상(異常)적인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해를 말하며
「재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재해에 의해 필요가 발생하는
사업이며 재해 후,
시설을 원형으로 복구시키는 것

1. 사업개요

수산관계시설의 재해복구에 관해서는 「공공토목 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및 「농림수산업 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재해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있어서 「재해」라는 것은 폭풍, 홍수, 고조, 지진 외에 이상(異常)적인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해를 말하며 「재해복구사업」이라는 것은 재해에 의해 필요가 발생하는 사업이며 재해 후, 시설을 원형으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재해가 발생한 시설을 원형으로 복구시키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것에 대체할 필요시설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재해복구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해복구사업의 개소(箇所) 또는 이를 포함한 일련의 시설의 재도재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구조물의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로서 재해관련사업이 있다.

2.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1) 대상시설

1) 어항시설

- ① 외곽시설 : 방파제, 방사제, 방조제, 도류제, 수문, 갑문, 호안, 제방, 돌제, 흥벽
- ② 계류시설 : 안벽, 물양장, 계선부표, 계선말뚝, 잔교, 부잔교, 선양장
- ③ 수역시설 : 항로, 박지
- ④ 수송시설 : 철도, 도로, 주차장, 다리, 운하, 헬리포트

2) 해안시설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방호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해안 또는 이것에 설치하는 제방, 호안, 돌제, 기타의 해안을 방호하기 위한 시설

(2) 국고보조율

재해복구사업비 및 당해 지방공공단체의 당해 년도의 표준세수입에 의해 다르지만 기준은 2/3(북해도, 낙도, 아마미(奄美), 오키나와(沖繩))는 4/5)

3. 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

(1) 대상시설

1) 어업용시설

- ① 연안어장정비개발시설
방파제, 이안제, 잠제, 호안, 제방, 돌제, 도류제, 수로, 착정기질(수산동식물의 정착을 위한 사석공, 콘크리트블록공, 모래깔기공사(敷砂工))

② 어항시설

어업의 근거지로 되는 수역 및 육역 내에 있으 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유지관리에 속하는 것

2) 공동이용시설

- ① 수산업협동조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소유에 관한 것
수산물창고, 수산업용 생산자재창고, 수산물처리가 공시설, 수산업용 생산자재제조시설, 공동작업장, 산지시장시설, 종묘생산시설, 양식시설, 수산업용 기구 수리시설, 통신시설, 전기공급시설, 제빙냉동 냉장시설, 급수시설, 급유시설, 공해방지시설
- ② 지방공공단체의 소유에 관한 것
종묘생산시설, 공해방지시설

(2) 국고보조율

기준은 어업용 시설이 6.5/10이고 공동이용시설이 2/10임

4. 재해관련사업

(1) 어항관계재해관련사업

1) 사업내용

부담법에 의해 재해복구사업으로서 채택한 개소(箇所) 또는 이것을 포함한 일련의 시설의 재도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구조물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에 맞추어 시행하는 공사

2) 대상시설

부담법이 적용되는 전 시설

3) 국고보조율

5/10(해안에 관해서는 북해도 · 낙도 5.5/10, 오키나와 6/10, 아마미 2/3)

⑤ 일본 수산관제시설 재해복구사업의 개요

(2) 재해관련어업취락 환경시설복구사업

1) 사업내용

폭풍, 홍수, 고조, 지진, 기타 이상적인 천연현상에 의해
피해된 부담법 또는 잠정법에 의한 시설의 재해복구와
관련하여 동일어항구역 내에서 동일한 재해에 의해 피
해를 입은 어업취락환경시설을 원형으로 복구하는 공사

2) 대상시설

어업취락배수시설, 수산음작용수시설, 농지 · 광
장시설(식재(植栽)를 제외), 방재안전시설

3) 국고보조율

5/10



방파제의 피해 (1)

(3) 재해관련 긴급대규모표착유목 등 처리대책사업

1) 사업내용

홍수, 태풍 등에 의해 해안에 표착된 대규모의
유목 등 및 표착물이 해안보전시설의 기능을 저해
하는 경우에 긴급하게 유목 등 표착물 처리(집적,
선별, 적입, 운반 및 소각 등)를 실시

2) 대상시설

해안보전시설과 시설(제방, 돌체, 호안, 흥벽,
이안제, 모래사장 등)의 기능을 저해하는 표착물

3) 국고보조율

5/10



방파제의 피해 (2)



호안, 도로의 피해



유목표착상황